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. 12. 13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: 2022년 11월 10일
- 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
- 다.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8일
- 라. 상정일자: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
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(2022. 11. 2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도시국장 김창환)

- 가. 제안이유
 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 중 광고비용과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광고의 비용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 - 주소정보위원회 명칭 정비 (안 제6조)
 -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(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종란)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 중 광고비용과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4조에서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구청장이 정하는 광고의 비용 중 유료의 경우 “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” 규정한 사항을 “주소정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” 개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광고비 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14조에서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의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,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제개선을 건의함에 따라 주소정보시설 유지·관리 위탁 시 “최근 3년 이내”라는 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.

○ 본 조례안은

- 「도로명주소법」의 조례 위임사항인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시 광고비용을 “구청장이 정하는 것”에서 “주소정보 위원회가 결정하도록” 개정하여 전문성을 담보하고 민주적 결정을 촉진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사료되며,
- 또한,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의 위탁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83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11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(광고의 비용) 정비 및 위탁기관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광고의 비용(유료) 정비(안 제4조제2호)
- 나. 명칭 정비(안 제6조제1항)
- 다. 위탁기관 정비(안 제14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도로명주소법」,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2. 9. 29. ~ 10. 19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유료: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~~구 주소정보위원회~~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위원회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제2호 중 “~~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~~”를 “지방자치단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광고의 비용) 법 제25조제4항 에 따른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 2. <u>유료: 제1호 각 목 외에 구청장 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</u>	제4조(광고의 비용) ----- ----- 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유료: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서 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위 원회에서 정한다.</u>
제6조(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29조에 따라 <u>구 주소정보위 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 원장·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. ②·③ (생 략)	제6조(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<u>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주소정보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위탁) ① (생 략)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 외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1. (생 략) 2. <u>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에</u>	제14조(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지방자치단체</u> -----

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
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
체

③ (생 략)

-

③ (현행과 같음)